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2004.7.20.(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4년 7월 5일
- 회부일자 : 2004년 7월 5일

다. 상정일자 :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 2004. 7. 15 :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김 재 욱)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국가사무로 전환된 위탁사무를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사무’가 도지사권한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탁사무에서 삭제하고자 함.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 상 만)

○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금번 조례개정은 지난 1월 20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사무’가 도지사의 권한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의 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탁사무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운수사업 경영자 연수교육과 보고·검사 업무는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건설교통부장관과 도지사의 공동 권한으로 되어 있는 바 위탁사무에서 삭제하여도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제28조 (경영자연수교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수사업자의 경영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영을 담당하는 임원(개인인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경영자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4.1.20>

제44조 (보고·검사)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대하여 당해 사업이나 당해 화물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4.1.20>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교통과 소관중 제10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현행					개정안				
대상 실과	일련 번호	위탁대상 사무명	위탁대상 기관	근거 및 적용법규	대상 실과	일련 번호	위탁대상 사무명	위탁대상 기관	근거 및 적용법규
교통과	10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각협회 소관별 다음의 권한 · 경미한 등록사항 변경신고 · 사업의 휴지 및 폐지신고 · 등록사항변경신고 (다만, 동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 또는 상속신고를 포함하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제외) · 동법 제28조의 규 정에 의한 경영자 연수교육 · 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 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사업 등에 관한 보고서 또는 서류의 제출요청	충청북도화물 자동차운수사업 협회, 충청북도개별 화물자동차운 수사업협회, 충청북도용달 화물자동차운 수사업협회, 충청북도화물 자동차운수주 선사업협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단서 동법 제16조, 동법 제24조 동법 제21조 제2항 동법 제28조 동법 제44조 제1항			<삭 제>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 제95조(사무의 위임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무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제3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6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폐지신고)** ①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 기타 일반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3조제7항의 규정은 운송주선사업자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4조(준용규정) 제4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동조제1호를 제외한다), 제8조의5, 제10조(동조제5항·제8항 및 제10항을 제외한다), 제11조, 제12조(동조제4호를 제외한다),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10조제6항 및 제12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운송약관"을 "운송주선약관"으로 본다.

제28조(경영자연수교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수사업자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영을 담당하는 任員(개인인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경영자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4조(보고·검사)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이나 당해 화물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3조제5항·제21조제4항 또는 제2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화물운송질서 등의 문란행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운수사업자의 위법행위 확인 및 운수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성명, 소속기관, 출입의 목적 및 일시 등을 기재한 서류를 상대방에게 교부하거나 관계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5조 (권한의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변경신고
2. 법 제16조(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휴지 및 폐지신고
3.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변경신고